

의안번호	제2803호
의결 연월일	2024. 7. 25. (제295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	------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7. 1.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03호
----------	--------

제출연월일: 2024. 7. 1.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의직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현행)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개정) 「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나.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증액(안 제2조): 월 50만원 → 월 60만원

다.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신설(안 제4조): 월 3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4년 당초예산 기 확보

다. 협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19527(2024. 5. 14.)호]

라. 기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897호

가) 예고기간: 2024. 5. 17.(금) ~ 2024. 6. 6.(수)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성군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3의2] (현행)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4호와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	월 500,000원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3의2] (개정)<2024.00.00.>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4호와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	월 600,000원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5] (신설)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성군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 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성군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u></p>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각 조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재정 수반요인 있음.
- 비용 산출근거(2024년 지급 기준)
 - 수의직렬공무원: $600,0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12\text{개월} = 7,200,000\text{원}$
 - 직급보조비 가산금: $300,0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12\text{개월} = 3,600,000\text{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34102호, 2024. 1. 5., 일부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20. 1. 7.]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개정 2024. 1. 5.>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 업무 등의 수당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p> <p>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 업무</p> <p>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p> <p>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p>	<p><u>월 350,000원</u> <u>(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p>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개정 2023. 1. 6.>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인 장학관,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교육연구원(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인 장학관,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교육연구원(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인 장학관,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원(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학과장(학장보),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180,000원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75,000원

비고

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파견된 공무원
 - 1)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이하생략